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김길자 의원 대표발의】



2021. 12. 13.

運 營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檢 討 報 告 書

1. 제안경위

가. 대상안건

의안번호	의안명
제43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제43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나. 제 출 자 : 김길자 의원 외 6명

다. 제출일자 : 2021년 12월 8일

라. 회부일자 : 2021년 12월 8일

2.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 1)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2) 징계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 3)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4)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안 별표)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 1)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2) 의원면직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3조)
- 3) 위반자에 대한 문책 등 조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생략

5. 검토의견

- 본 규칙안 2건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독립성 · 자율성을 높이려는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징계와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일괄로 검토보고 드림.

- 법률 제18472호 「지방공무원법」(2021.10.8. 개정, 2022.1.13. 시행)의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은 지방의회의 인사위원회가 지방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사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정년 도래 등으로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징계혐의자에 대해서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우선 심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징계절차가 퇴직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되었음.
-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 규칙의 목적으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 안 제2조는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을 별표를 따르도록 하고
 - 안 제3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
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에서 소속 공무원의 의원면직 제한 사유를 1호부터 4호까지 규정하였으며, 제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음.
- 안 제4조는 인사담당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의원면직 제한대상자를 의원면직 허용하거나,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문책에 관하여 규정함.

○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법」 등 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 운영의 독립성·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소속 공무원의 징계 및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우리 의회 규칙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2022.1.13. 시행]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외하되, 그중 시의 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별로 인사위원회를 두되, 시·도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교육감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인사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시·도의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시·도의회 사무처장,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시·군·구의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72조(징계 등 절차) ① 징계처분등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된 하위직공무원의 징계처분등과 소속 기관(시·도와 구·시·군, 구·시·군)을 달리 하는 동일사건에 관련된 사람의 징계처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인사위원회 또는 시·도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22.1.13. 시행)

제1조의4(징계등의 관할)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두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무원의 징계나 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 사건을 심의·의결한다.